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2025. 4.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1.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2. 심사결과	2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
4.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5
[행정안전부 소관]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3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31
[인사혁신처 소관]	31
[경찰청 소관]	31
[소방청 소관]	32
5. 대체토론의 요지	63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65
7. 심사결과	67
8. 소수의견의 요지	68
9. 부대의견	68
※ 첨부	71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4. .
행정안전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세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 : 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년 4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4.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예산 · 결산 · 기금심사소위원회(2025. 4. 28.) 상정 · 심사 ·
의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4. 28.) 소위원회 심사보고 · 의결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A)	추경안(B)	증 감 (C=B-A)	% (C/A)
합 계 (일반회계+특별회계)	72,083,936	72,762,544	678,608	0.9
일반회계	69,720,872	70,381,802	660,930	0.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63,064	2,380,742	17,678	0.75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A)	추경안(B)	증 감 (C=B-A)	
				% (C/A)
합 계	331,129	338,492	7,363	2.2
일반회계	331,129	338,492	7,363	2.2

※ 자료: 소방청

4.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행정안전부 소관]

I. 개 관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편성 배경 및 요건

□ 정부는 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재해 대응 장비를 확충하고, ② 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며, ③ 인공지능(AI)산업 중심의 기술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④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¹⁾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나. 편성 규모 및 주요 내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2조원 수준으로, 정부는 세계잉여금·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1조원을 활용하고, 8.1조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 이를 재원으로 한 일반지출 12.2조 중 3.2조원은 재해·재난 대응, 4.4조원은 통상 및 AI 지원, 4.3조원은 민생 지원, 0.2조원은 주요 행사 개최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구 분	편성액	주요 내용
1.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원
2.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3. 민생 지원	4.3조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4. 기타	0.2조원	▶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합 계	12.2조원	

※ 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가. 행정안전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의 증감은 없고,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72조 839억 3,600만원 대비 총 6,786억 800만원 증액된 72조 7,625억 4,400만원임.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A)	2025년 추경안(변경안)		증감액 (B-A)	증감률
			요구	조정(B)		
총지출(전체)	72,447,356	72,083,936	72,762,544	72,762,544	678,608	0.9
지출(추경대상) (일반회계+특별회계)	1,471,512	1,239,098	1,917,706	1,917,706	678,608	54.8
[일반회계]	601,845	364,944	1,025,874	1,025,874	660,930	181.1
국경일등정부행사 (2131-300)	1,805	4,924	5,854	5,854	930	18.9
재난대책비(보조) (2734-300)	600,040	360,020	1,020,020	1,020,020	660,000	18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69,667	874,154	891,832	891,832	17,678	2.0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300)	869,667	874,154	891,832	891,832	17,168	2.0

※ 자료: 행정안전부

나. 행정안전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급한 현안인 대통령 취임행사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대책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7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를 위한 국경일등 정부행사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최근 산불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사유시설 복구비 소요를 반영하여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에 6,6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 피해 지역 등 긴급 정비가 필요한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에 176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A)	202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
[일반회계]	601,845	364,944	1,025,874	660,930	181.1
□ 국경일등정부행사 (2131 - 300)	1,805	4,924	5,854	930	18.9
□ 재난대책비(보조) (2734 - 300)	600,040	360,020	1,020,020	660,000	18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69,667	874,154	891,832	17,678	2.0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635 - 300)	869,667	874,154	891,832	17,678	2.0

※ 자료: 행정안전부

II. 검토의견

1. 국경일등정부행사(2131-300)

-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예산안의 경우 적정규모의 예산인지 여부와 더불어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요건의 부합 여부, 충분한 행사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국경일등정부행사’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49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8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보다 9억 3,000만원(18.9%)이 증액되었음.

이번에 증액된 예산 전액은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를 위해 편성된 것임.

[국경일등정부행사 사업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요구	조정(B)		
국경일등정부행사	1,805	1,805	4,924	5,854	5,854	930	18.9
국경일 행사	1,440	1,440	4,559	4,559	4,559	-	
국빈방한 등 정부 의전행사	365	365	365	365	365	-	
대통령 취임행사	-	-	-	930	930	930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여부

- ☐ 2025년 6월 3일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임.
- ☐ 「대한민국헌법」 제69조²⁾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³⁾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로부터 개시됨.
-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6월 3일 시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하면 즉시 대통령 취임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행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⁴⁾.
-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를 위해 국경일등정부행사 사업에 대통령 취임행사를 위한 예산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2,830만원, 임차료 100만원, 일반용역비 8억 9,570만원, 사업추진비 500만원 등임.

2) 「대한민국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 ③ (생략)

4) 대통령의 취임선서 후 취임행사를 추후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와 같은 선례는 없음.

□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는 임기가 당선 즉시 시작되어 당선자가 취임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전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태에 있어 이임 대통령 환송 절차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2017년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취임행사 상황과 유사함.

□ 이번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 예산은 제19대 대통령 취임행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⁵⁾, 당시 집행한 4억 7,700만원 보다 94.9% 증가한 9억 3,000만원을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 세목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목	예산	세부내역
일반수용비 (210-01)	28,300	○ 취임행사자문단 자문료 : 4,400 (11명*2회*20만원) ○ 안내요원 수당 : 7,500 (150명*5만원) ○ 안내 및 행사요원 간식 : 4,000 (400명*1만원) ○ 주차료 : 5,000 (200대*2.5만원) ○ 조달계약 수수료 : 7,400(계약금의 0.82%)
임차료 (210-07)	1,000	○ 비표교부 노트북 임차료 : 1,000 (10대*10만원)
일반용역비 (210-14)	895,700	○ 행사기획 및 연출 : 73,864 ○ 중계·음향·영상·조명·무대 임차 및 설치 : 356,652 ○ 행사장 조성 : 158,400 ○ 행사운영비 : 96,500 ○ 일반관리비 등 : 210,282
사업추진비 (240-01)	5,000	○ 유관기관 업무협약 : 5,000 (10명*20회*2.5만원)

※ 자료 : 행정안전부

5) 제19대 대통령 취임행사는 기존 국경일 행사 예산을 활용하고 기존 행사 부족분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물가상승률(연 3%, 7년)을 반영하였고, 행사 관련 일반용역비에 안전관리비 편성 의무가 추가되었으며, 턴키(Turn-key)계약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다만,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를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을 때 「국가재정법」 제89조⁶⁾의 편성 사유에 적합한 경우에 편성할 수 있음⁷⁾.
- 그러므로 기존 국경일등정부행사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동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면 3대 국경일(3·1절, 개천절, 한글날) 행사준비를 위해 1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광복 80주년 경축행사 준비를 위해 3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6)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7) 「한국재정」 개정판, 박기영, 2018. p.174 참조

[국경일등정부행사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국경일 행사			
	3대 국경일 행사(3·1절, 개천절, 한글날)	1,082	4,559
	광복 80주년 경축행사	3,477	
국민방한 등 정부 의전행사			365
합 계			4,924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21일 현재 동 사업의 집행액은 3·1절 행사비용 6억 1,700만원으로 약 1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를 위해 필요한 9억 3,000만원은 국경일등정부행사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함.
- 기존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 여부는 향후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

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임.

□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사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취임행사의 경우 기존 국경일 행사 예산을 활용하고 기존 행사 부족분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음.

[역대 대통령 취임행사 현황]

구분		제17대(이명박)	제18대(박근혜)	제19대(문재인)	제20대(윤석열)
행사개요	일시	2008.2.25.(월) 11:00	2013.2.25.(월) 11:00	2017.5.10.(수) 12:00	2022.5.10.(화) 11:00
	장소	국회의사당 앞마당	국회의사당 앞마당	국회의사당 중앙홀	국회의사당 앞마당
	행사주제	함께 가요, 국민 성공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초청 인원	6만여명	7만여명	300여명	4만5천여명
	집행액	2,479백만원	3,093백만원	477백만원	4,009백만원
식순		대통령 입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식사(式辭) 취임선서 군악대·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취임사 축하공연 이임대통령 환송 대통령 행진 폐식	대통령 입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식사(式辭) 취임선서 군악대·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취임사 축하공연 이임대통령 환송 대통령 행진 폐식	대통령 입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폐식	대통령 입장 개식영상 및 선언 국민의례 식사(式辭) 취임선서 군악대·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취임사 청와대 개방 현장 중계 축하공연 이임대통령 환송 대통령 행진 폐식

※ 자료 : 행정안전부

□ 둘째, 예비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22조⁸⁾와 예비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예비비 집행은 예산안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하며(시급성·긴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불가피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비록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지출(보충성)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할 것임⁹⁾.

□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취임행사의 경우 예비비 집행의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과 긴급성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 일정이 다소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번 취임행사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의 취임행사인 만큼 국민적 갈등을 통합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

8)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9) 「한국재정」 개정판, 박기영, 2018. p.601 참조

도록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6월 3일 시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약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일정을 기다리는 것은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예산안의 경우 적정 규모의 예산인지 여부와 더불어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요건의 부합 여부, 충분한 행사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0) 행정안전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임.

2. 재난대책비(보조)(2734-300)

- 대규모의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가 연내 완료되지 않고 다음 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2025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를 산출하여 해당 예산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이월, 불용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대책비’ 사업은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등을 추진·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3,60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6,600억원이 증액된 1조 20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난대책비(보조)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제1회 추경(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재난대책비(보조)	600,040	-	360,020	1,020,020	660,000	183.3

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필요

- 재난대책비 사업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복구(설계용역·공사비 선급, 임시조립주택 등)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 주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 비율은 50%에서 70%에서 결정됨.
-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에는 내역사업인 ‘재난대책비 지원’으로 2024년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 비용 2,375억 9,800만원과 2025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자 지원 및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비용 1,223억 6,200만원 등 총 3,599억 6,000만원이, ‘재난대책비 운영’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의 8개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많은 수의 사상자 및 이재민과 각종 시설 등의 재산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생활안정지원금 2,619억원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비용 3,981억원 등 총 6,600억원의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음.

[2025년도 재난대책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재난대책비(보조) : 360,020		○ 재난대책비(보조) : 1,020,020(+660,000)	
359,960	《재난대책비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59,960 가. '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1식 × 237,598 나. '25년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1식 × 122,362	1,019,960	《재난대책비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1,019,960(+660,000) 가. '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1식 × 237,598 나. '25년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1식 × 122,362 다. '25년 산불 피해 복구비 지원 1식 × 660,000 • 사유시설 피해자 지원 261,900 • 공공시설 복구비 398,100
60	《재난대책비 운영》 ○ 일반수용비(210-01) : 39 - 자연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 제작 -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서 및 사례집 제작 등 ○ 국내여비(220-01) : 9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여비 등 ○ 업무추진비(240-01) : 12 -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간담회, 재해복구사업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	60	좌 동

□ 2025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 예산(1,223억 6,200만원)은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비, 12.29여객기 참사 피해 수습 지원 등으로 54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4월 19일 현재 가용 예산은 1,168억 9,800만원임.

[2025년도 발생 재난에 대한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25년도 본예산	집행 내역	집행액	집행잔액
122,362	소 계	5,464	116,898
	'24.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비	3,712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수습 지원	1,735	
	이태원 참사 부상자 간병비(3차년)	17	

※ 자료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상황 보고(2025. 4. 18. 기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소실된 면적은 48,239ha에 이르고, 사망자 31명 부상자 52명 등 총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4,232동의 주택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총 1,727세대 2,912명의 이재민이 임시대피시설 또는 임시숙박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

[2025년 산불 인명피해 현황]

지 역 명	계	사 망	중 상	경 상
계	83	31	9	43
경 북	67	27	4	36
경 남	14	4	5	5
울 산	2	-	-	2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5년 산불 피해 주민대피 현황]

구 분	총 계			임시대피시설 (체육관, 학교)			임시숙박시설 (공공·민간의 연수·숙박시설, 마을회관·경로당 등)		
	대피소	세대	인원	대피소	세대	인원	대피소	세대	인원
합 계	227	1,727	2,912	2	50	69	225	1,677	2,843
경북(소계)	225	1,717	2,898	2	50	69	223	1,667	2,829
안 동	65	722	1,141	1	43	58	64	679	1,083
의 성	37	117	190	1	7	11	36	110	179
청 송	55	418	683	-	-	-	55	418	683
영 양	13	69	110	-	-	-	13	69	110
영 덕	55	391	774	-	-	-	55	391	774
경남(하동)	1	1	2	-	-	-	1	1	2
울산(울주)	-	-	-	-	-	-	-	-	-
전북(정읍)	1	9	12	-	-	-	1	9	12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¹¹⁾하고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기존에 반영된 예산 규모로는 신속한 피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요건이 충족되고,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산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산불 피해 조사 및 피해 복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증액 규모 6,600억원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피해 확정 등 복구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어 구체적인 피해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급 규모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

1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략적인 피해 조사 결과와 과거 재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제출한 필요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 복구 계획 등 확정 후 지체 없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소요예산 미산출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적정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금번 산불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재난이 발생한 후에 집행되는 재난대책비 사업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의 적정 예산이 지급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202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재난대책비 사업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보조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1~2023 재난대책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2021	820,000	820,000	5,878	16,622	842,500	842,500	356,933	100	42.4
2022	100,035	100,035	62,652	469,465	632,152	632,152	203,841	100	32.2
2023	150,035	150,035	18,418	-	168,453	168,453	140,558	100	83.4

※ 자료 : 행정안전부

특히, 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한 호우로 큰 규모의 예비비가 재난대책비로 지급되었던 2022년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32.2%에 그쳤음.

□ 이번 산불 재난과 같이 대규모의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가 연내 완료되지 않고 다음 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경우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2025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규모를 산출하여 해당 예산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철

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이월, 불용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734-30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증액 대상 지구 16개소 중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11개소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산불 피해지역 5개소에 대하여도 2026년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당초 계획대로 재해 예방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지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급경사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8,74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76억 7,800만원이 증액된 8,918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제1회 추경(B)	증감 (B-A)	%
	본예산	추경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8	-	874,154	891,832	17,678	2.0

나. 산불 피해 지역 외 지구의 추정 편성 요건 충족 여부 재검토 필요

-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¹²⁾에 따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탈면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수·보강 등 정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도 본예산에는 총 259개소의 급경사지 정비를 목적으로 1,25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지역 5개소 및 공기를 앞당겨 사업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11개소 등 총 16개소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 위해 176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흙과 돌 등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의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 증액 규모]

구 분	산불피해지역 5개소	그 밖의 지역 11개소	총 계
증액 규모	72억 3,600만원	104억 4,200만원	176억 7,800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대상 지역별 추경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지구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까지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추경 전	추경 후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증액
경북 영양	형제바위	2023.1. ~2026.12.	2023.1. ~ ~~2026.6.~~	7,500	7,500	3,050	2,842	2,225	2,225
경북 영양	토구	2021.1. ~2026.12.	2021.1. ~ ~~2026.6.~~	7,000	7,000	3,449	3,319	1,500	2,051
경남 하동	서해랑	2024.1. ~2026.12.	2024.1. ~ ~~2026.6.~~	1,919	1,919	100	100	500	1,319
경남 산청	금서	2024.1. ~2026.12.	2024.1. ~ ~~2026.6.~~	1,333	1,333	100	82	617	616
경남 산청	신연	2023.1. ~2026.12.	2023.1. ~ ~~2026.6.~~	2,450	2,450	400	100	1,025	1,025
강원 평창	수하리3	2021.1. ~2026.12.	2021.1. ~ ~~2026.6.~~	15,631	15,631	10,549	10,549	3,081	2,000
강원 화천	동촌35	2021.1. ~2026.12.	2021.1. ~ ~~2025.12.~~	2,895	2,895	2,140	2,140	423	332
충북 영동	가람	2024.1. ~2026.12.	2024.1. ~ ~~2026.6.~~	2,000	2,000	100	100	950	950
충북 보은	길탕3	2025.1. ~2026.12.	2025.1. ~ ~~2026.6.~~	900	900	0	0	50	850
충남 보령	명천1	2025.1. ~2026.12.	2025.1. ~ ~~2026.6.~~	910	910	0	0	50	860
충남 홍성	월산	2025.1. ~2026.12.	2025.1. ~ ~~2025.12.~~	270	270	0	0	20	250
전북 김제	오봉	2024.1. ~2026.12.	2024.1. ~ ~~2026.6.~~	2,000	2,000	100	100	950	950
전북 장수	선창1	2025.1. ~2026.12.	2025.1. ~ ~~2026.6.~~	1,500	1,500	0	0	75	1,425
전남 고흥	백일(원주도)	2025.1. ~2026.12.	2025.1. ~ ~~2026.6.~~	1,300	1,300	0	0	65	1,235
전남 고흥	봉양	2025.1. ~2026.12.	2025.1. ~ ~~2026.6.~~	1,200	1,200	0	0	50	1,150
제주 서귀포	하예	2024.1. ~2026.12.	2024.1. ~ ~~2026.6.~~	930	930	50	50	440	440

※ : 산불 피해지역(5개소) : 긴급정비 필요지역(11개소)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투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16개소는 모두 당초 계획으로는 2026년 12월에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추가 투입으로 2개소는 2025년 12월에, 14개소는 202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2026년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급경사지 정비를 마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또는 축대를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¹³⁾를 말하는데, 특히 산림의 경우 급경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아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비 작업이 필수적임.

□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산림이 광범위하게 소실되면서 지반이 약화되었고, 옹벽·축대, 낙석방지시설 등 붕괴 예방 시설도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사면붕괴 등 추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사면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정비사업 완

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료 시기를 앞당기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산불 피해 발생지역 외의 정비사업 지구 11개소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¹⁴⁾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통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 본예산에 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정부의 지출증대 경향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의 증액은 본예산 확정 후 당해연도에 편성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그런데, 산불 피해지역이 아닌 정비사업 지구 11개소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대내·외 적으

14)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산불 피해 발생 지역 5개소 외에 11개소의 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산불 피해지역 5개소에 대하여도 2026년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당초 계획대로 재해 예방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소방청 소관〕

I.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3,311억 2,900만원 대비 73억 6,300만원(2.2%)을 증액한 3,384억 9,200만원임.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추경안(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40,389	340,389	331,129	338,492	7,363	2.2
합 계	340,389	340,389	331,129	338,492	7,363	2.2

※ 자료: 소방청, 총지출 기준

-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①산불발생시 소방대 도착 전 주민자율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충을 위한 51억 6,300만원 증액, ②산불진화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을 위한 22억원 증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증 감 (B-A)	%	편성내역
	본예산 (A)	추경안 (B)			
①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1,017 (-)	6,180 (5,163)	5,163	507.7	· 비소함 1,199개소 - 348개소(소화전+비소장치) - 851개소(비소장치)
②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37,374 (-)	39,574 (2,200)	2,200	5.9	· 소방헬기(S-92) 1대 배면 물탱크 장착비용
합 계	331,129	338,492	7,363	2.2	

※ 자료: 소방청

II. 검토의견

1.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1133 - 300)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동시 다발성 산불의 발생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방청은 사업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이후에도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과 보관·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과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방청은 이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세부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법제 마련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와 같이 구체적 소방시설·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2025년도 추경의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 예산 규모(51억 6,300만원)는 기존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세부사업 예산액(10억 1,700만원)의 약 5배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소방청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가. 개 요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은 화재예방 및 제도 개선 발굴, 화재예방법 추진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법령 제·개정 및 민원센터 운영,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 다중이용업소 화재 위험평가,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비 51억 6,300만원을 반영하여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사업 본예산 10억 1,700만원 대비 507.7%를 증액한 6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2025년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본예산(A)	2025년 추경안(B)	증 감 (B-A)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920	1,017	6,180	5,163	507.7
·화재예방 및 제도 개선 발굴	84	74	74	-	-
·화재예방법 추진 안전관리 강화	149	139	139	-	-
·소방시설법령 제·개정 및 민원센터 운영	169	221	221	-	-
·중앙화재안전 조사단 운영	333	343	343	-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135	190	190	-	-
·대국민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50	50	50	-	-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	-	5,163	5,163	순증

※ 자료: 소방청

나. 비상소화장치의 조속한 설치 및 철저한 사용·관리 교육 필요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7조원)¹⁵⁾’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산림인접마을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림인접마을 주민 스스로가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비상소화장치를 1,199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임.

15)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7조원)’은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더불어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세부 편성 내역을 다음과 같음.

- (사전탐지) AI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68억원)
- (진화역량)
 -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 중·대형 물버킷 확충(+30대)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1,077억원)
 -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48대),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1,199개소)로 지상 진화역량 강화(+232억원) 등
- (산림인프라)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2배 수준 투자 확대(+1,008억원)
- (R&D)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 지원(117억원 신규)
- (예비비)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1.4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 '25.3.22.~3.30. 기간 동안 11건의 중·대형 산불로 83명(사망 31, 부상 52) 인명피해, 주택·농축산시설 등 7,882개소 시설피해 발생(자료: 산림청)

<연대별 산불 발생 일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9 -2023
104일	136일	142일	173일

※ 자료: 산림청

<산불 피해 현황(2016~2024)>

(단위 : 건, ha, m³,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391	692	496	653	620	349	756	596	279
면적	378	1,480	894	3,255	2,920	766	24,797	4,992	123

* ('16~'20년) 대형산불 발생건수 11건, 산불피해면적 7,153ha

** ('21~'25년) 대형산불 발생건수 24건, 산불피해면적 76, 149ha

※ 자료: 산불통계연보, 산림청

<2025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규모 : (추경) 비상소화장치 1,199개소

- 유형 ❶ (소화전+비상소화장치) 348개소 x 15백만원 x 50%(국비) = 2,610백만원
- 유형 ❷ (비상소화장치) 851개소 x 6백만원 x 50%(국비) = 2,553백만원

①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미설치된 지역)	②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기설치된 지역)	함 내부 사진
		
(공사비용) 1개소당 15백만원	(공사비용) 1개소당 6백만원	(구성품) 드럼세트, 소방호스, 관창 등

□ 총사업비 : 103억원(국비 51.6억원, 지방비 51.6억원)

□ 사업수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50%)

□ 집행절차



※ 자료: 소방청

□ 이 사업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고성 홍와솔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여 주택 22채 중 19채를 화재로부터 지켜낸 사례에 착안한 것으로, 2020년에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820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전국 총 2,807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음.

<고성 홍와솔 마을 주택방어 사례>



※ '19년 4월 고성 산불시 비상소화장치(주민자율설치) 사용으로 주택 22채 중 19채 방어
 ※ 자료: 소방청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16>

(2024. 12. 31. 기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807	25	10	1	15	63	11	43	9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852	115	17	41	50	434	23	2	8

※ 자료: 소방청

□ 참고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은 2020년, 2022년

16) 2,807개소 중 1,664개소는 국비 지원(지원률: 50%, 지원액: 109억원)을 통해 설치하였고, 1,143개소는 시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였음.

및 2023년에 실시되었는데, 2020년, 2022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2023년도에만 본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되었음¹⁷⁾.

<연도별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본예산 편성액	추경예산 편성액	계	비 고 (설치 지역, 규모) (추경의 경우 추경 사유)			
				구분	합계	경북	강원
2020	-	3,500	3,500	계	820	-	820
				유형1 (소화전+비소함)	550	-	550
				유형2 (비소함)	270	-	270
2021	-	-	-	-			
2022	-	1,963	1,963	구분	합계	경북	강원
				계	627	177	450
				유형1 (소화전+비소함)	27	27	0
				유형2 (비소함)	600	150	450
2023	5,423	-	5,423	구분	합계	경북	강원
				계	1,044	438	606
				유형1 (소화전+비소함)	509	106	403
				유형2 (비소함)	535	332	203
2024	-	-	-	-			
2025	-	5,163	5,163	· 총 11개 시도 1,199개소 설치 계획			
계	5,423	10,626	16,049				

※ 자료: 소방청

17) 소방청은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은 지방비(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었고, 그 동안 국비는 2020년, 2022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지원되었으며, 2023년도에만 일반회계 본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편성·지원하였다고 설명함(지원률: 50%). 2023년도의 경우, 정부안에는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4억 2,3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과 관련해서 소방청은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대한 수요조사(2025. 3월)를 거쳐 산림과의 거리, 기상상황,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설치 필요지역 11개 시도 1,199개소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계획(안)>

(단위 : 개소)

시 도		합계	①유형 (소화전+비소함)	②유형 (비소함)
합계		1,199	348	851
대구		60	20	40
대전		24	19	5
울산		50	18	32
세종		19	7	12
경기	남부	90	50	40
	북부	40	23	17
강원		63	35	28
충남		29	0	29
전북		50	25	25
전남		80	15	65
경북		654	118	536
경남		40	18	22

※ 자료: 소방청

<2025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선정기준>

○ 수요조사

- 최근 동시다발 대형산불을 계기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25년 / 전국 1,303개소 수요)

○ 선정기준

① (지역특성)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마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

② (기상상황) 봄·가을 바람 방향* 고려하여 위험지역 분류

* 남서풍(3~5월·10~12월), 우리나라 산불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침

③ (주변환경) 화목보일러 설치현황 등, 주택→산림으로 확산 위험성 고려

④ (그외) 마을 구성원 현황(장애인, 노인 등)을 검토하여 인명피해 우려

⑤ (예외사항) 산림과 100m이내여도 위험이 없으면 제외, 반대로 100m 초과 거리라도 경사지, **강풍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은 추가

< 관련법령 >

- ▶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 ▶ 「동법 시행령」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선정 : 1,199개소

※ 자료: 소방청

-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동시 다발성 산불의 발생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¹⁸⁾ 소방력만으로는 민가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불로 인한 재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산불 발생 초기에 확산을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18)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시다발성 산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5℃ 상승)8.6%, (2.0℃ 상승)13.5% 산불발생 위험성 증가
(출처: 이병두(국립산림과학원), “초고속, 극한 산불 시대의 대응”,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간담회 발제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5. 4. 11(금), 39면.)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효과성이 입증된 비상소화장치¹⁹⁾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 소방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5월에 일반회계 예산의 배정 및 교부와 시·도 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7월까지 설계용역 입찰을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용역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확정 한 후, 12월까지 설치공사와 준공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19) 상세 실험 내용은 [참고] 참조

20) 참고로, 소방청은 2023년에 자체 추진한 ‘산림인접마을 산불취약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초로 ‘25년 하반기 고도화 사업(상수도관망도, 유동인구, 최근 30년 산불발생 현황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전국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비상소화장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2025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사업 집행 계획>

기 간	집행계획(집행주체)
‘25. 5월	예산 배정 및 교부(기획재정부, 소방청)
‘25. 5월	시·도 예산편성(시·도)
‘25. 5월 ~ 6월	기본계획 수립(시·도 소방본부)
‘25. 6월	설계용역 입찰(시·도 소방본부)
‘25. 7월	실시설계(수행기관)
‘25. 8월	공사용역 입찰(시·도 소방본부)
‘25. 8월 ~ 12월	설치공사(수행기관)
‘25. 12월	준공검사(시·도 소방본부)

※ 자료: 소방청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공사업체 선정 등이 지연될 경우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음²¹⁾²²⁾. 따라서 소방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의결된 후, 이후의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비상소화장치는 산림인접마을 주민이 스스로 사용하여야 하는 장치이므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이후에도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과 보관·관리를 위한 주민 교육과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21) 2022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구축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확보부터 설치공사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구축 사업 시·도 추가경정 예산 확보 및 공사 기간

- 강원: 2022. 10. 10. ~ 2023. 12. 29.(약 14개월 소요)

- 경북: 2022. 7. 18. ~ 2023. 3. 29.(약 8개월 소요)

(자료: 소방청)

22)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멸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II), 391면].

있으므로 소방청은 이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³⁾.

다.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필요

- 소방청은 그 동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은 본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관련 법제 마련 등을 위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비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은 산불발생 시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장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성격이 기존의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 개발을 위한 사업들과 상이함.

이와 같이, 본래 사업내용과는 이질적인 소방시설·장비 설치 예산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23)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은 비상소화장치소 인근 주민과 이장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관할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매월 1회 소방용수 점검 시 비치 장비 분실 및 작동여부 등을 확인·조치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력 도착 전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 점검 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2025년도 추경의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 예산 규모는 51억 6,300만원으로 기존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세부사업 예산액 10억 1,700만원의 약 5배에 달하고 있고, 향후 소방청이 전국적으로 1만 1,124개 지역에 이르는 산림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설하기보다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효과성 입증 실험 결과

- (실험기관) 국립소방연구원 ※ (기간) '21. 1. ~ 11.
- (추진배경) 산불과 강풍으로 발생한 비화로 인하여 산림인접지역 민가 및 건축물에 화염 전이를 방지하고, 소방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효과성 검증
- (실험내용) 산불 비화발생 시 비상소화장치 예비주수 여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민가(건축물)와 주변 가연물(낙엽·장작)의 **착화 가능성 분석**
 - (공통조건) 풍속 5%, 시설물·낙엽등과 이격거리 3m, 예비주수 3분
- (실험대상) 산불로 인한 피해 건축물 주요재질*(지붕, 벽체)로 선정
 - * [경량철골(39.3%), 아스팔트 싱글(19.1%), 한옥기와(13.5%), 샌드위치 패널(9%) 등]
- (실험결과) 산불로 인한 비화발생 시 비상소화장치 **약 3분간 예비주수**할 경우, 건축물 및 주변 가연물에 착화로 인한 **화재예방 가능**
 - 지붕 및 적재된 낙엽에 예비주수 할 경우 평균 387.7℃ 낮아짐
 - 벽체 및 장작·낙엽 등 예비주수 할 경우 평균 427.4℃ 낮아짐

대형산불로 비화발생 시 소방차량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 확보 가능

실험 건축물 예비주수 (실험 장면)	①슬레이트지붕-샌드위치패널 (좌:비주수, 우:주수)	②아스팔트싱글-드라이비트 (좌:비주수, 우:주수)
	 	 
	벽체 발화 자연 소화	외장재 탈락 자연 소화

※ 자료: 소방청

2. 중앙119 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 사업은 대형 산불 시기에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 만큼, 소방청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당초 사업 집행계획안대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사업은 기존에 운용 중인 소방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하는 것인 만큼 소방청은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소방헬기 개조와 물탱크 장착이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에 따르면 중형소방헬기는 900L 이상의 용량을 가진 물탱크를 장착하여야 함. 물탱크의 용량이 클수록 산불 화재 진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과 현재 중형소방헬기에 장착가능한 2,700L급 물탱크의 제작 및 인증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인증이 완료되면 소방청은 헬기 운항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수 용량이 보다 큰 물탱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은 대형·특수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전국 4개 권역 119특수구조대의 운영을 위한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를 장착하는 사업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완’ 사업비 22억원을 반영하여 본예산 373억 7,400만원 대비 5.98%를 증액한 39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2025년도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본예산(A)	2025년 추경안(B)	증 감 (B-A)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49,899	37,374	39,574	2,200	5.9
· 공무직 운영	2,215	2,246	2,246	-	-
·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	1,486	1,591	1,591	-	-
·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	3,366	2,779	2,779	-	-
· 특수구조대 훈련지원	422	617	617	-	-
· 소방헬기 도입	18,620	15,505	15,505	-	-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23,790	12,898	12,898	-	-
·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	-	1,738	1,738	-	-
·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	-	2,200	2,200	순증

※ 자료: 소방청

나.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일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에 증액 편성된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보강’ 사업비 22억원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7조원)²⁴⁾’의 일환으로 신규편성된 것으로,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영남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헬기(S-92, 시콜스키) 1대에 배면물탱크를 설치하여 소방헬기의 물수송 용량을 향상시켜 향후 대형 산불발생 시 소방헬기를 통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7조원)’은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더불어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세부 편성 내역을 다음과 같음.

- (사전탐지) AI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68억원)
- (진화역량)
 -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 **중·대형 물버킷 확충**(+30대)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1,077억원)
 -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48대),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1,199개소)로 지상 진화역량 강화(+232억원) 등
- (산림인프라)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 2배 수준 투자 확대(+1,008억원)
- (R&D) 산불 예측·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 지원(117억원 신규)
- (예비비)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1.4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도입 예정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장비 제원>

 	구 분	제 원
	탱크용량	3,850L
	탱크무게	325kg
	탱크길이 x 폭 x 높이	3600mm x 2000mm x 300mm

※ 자료: 소방청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보강 사업(안) 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비: 2,2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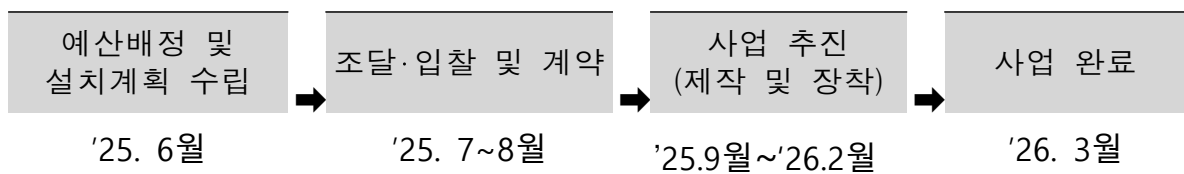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1대 × 2,200백만원 = 2,200백만원

· 물탱크 구매 : 13억원

· 헬기 개조 및 설치: 9억원

☐ 사업수행방법 : 직접수행

☐ 집행계획



※ 자료: 소방청

☐ 사업대상 소방헬기(S-92, 시콜스키, 2023년 12월 도입)에 대하여,
소방청은 S-92 소방헬기는 현재 밤비버켓²⁵⁾으로 화재진압을 수행

하고 있으나 2024년 상반기에 3,000L 이상 담수가 가능한 물탱크가 개발(호주, H 社)되면서 대용량 물탱크를 S-92 소방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소방헬기를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²⁶⁾.

참고로 소방청은 2024년 8월 1일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을 개정하여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소방헬기 도입 시에는 배면물탱크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²⁷⁾.

25) 산불진화장비 비교

구 분	형 식	장 점	단 점
배면 물탱크 (백리탱크)		· 속도 제한이 없음 · 화점 타격이 용이 · 최대 2,400리터 담수가 능(대형헬기) · 물바켓 대비 안전 · 신속 진화가 가능 ※ 산림청 전 기종 장착	· 장착시간 소요(약 20분) · 가격이 고가임(약 10억) · 고장 시 수리비가 많음 · 항공기 무게증가(약200kg)
물바켓 (밤비바켓)		· 장착이 용이(약 2~3분) · 가격낮음(약 7천만원) · 고장 시 수리가 쉬움	· 장착 후 항공기 속도가 제한 · 장애물에 걸릴 위험성이 큼 · 스윙현상 발생(정확한 화점 타격 어려움)

* 배면물탱크 장착 소방헬기는 물바켓 장착 소방헬기와 비교 시 담수 용량이 크고 비행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 기동이 가능

※ 자료: 소방청

26)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목적 출동비율이 평균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 진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대형헬기에 비해 크기가 작으나 소방청 보유 소방헬기 중 대형헬기인 S-92는 3,850리터 까지 담수가 가능함. 참고로 산불 진화를 주력으로 하는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담수량은 3,000 리터임.

※ 자료: 소방청

27)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헬기 기본규격’을 개정하여 이를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 성능 및 규격에 반영하였음(2024. 8. 1. 일부개정 및 시행).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 중 물탱크 관련 내용>

구분	중 형	대 형
임무 장비	6. 화재진압장비 6. 1. 물탱크(필수) 6. 1. 1. <u>물탱크는 장착 및 탈착이 쉬워야 하고 담수 능력은 900L 이상이어야 한다.</u> (이하 생략) 6. 2. 밤비바켓(선택) 6. 2. 1. 밤비바켓 작동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배선 및 조작 스위치 등이 조종석 / 승무원석에서 용이하게 운용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2. 2. 카고후크의 인양능력 감안하여 용량을 결정	6. 화재진압장비 6. 1. 물탱크(필수) 6. 1. 1. <u>물탱크는 장착 및 탈착이 쉬워야 하고 담수 능력은 2,000L 이상이어야 한다.</u> (이하 생략) 6. 2. 밤비바켓(선택) 6. 2. 1. 밤비바켓 작동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배선 및 조작 스위치 등이 조종석 / 승무원석에서 용이하게 운용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2. 2. 카고후크의 인양능력 감안하여 용량을 결정

<S-92(시콜스키) 배면물탱크 개조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밤비바켓(물주머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축확장식 배면물탱크 장착 추진

< 밤비바켓 단점 >

- 밤비바켓 이용 소방헬기, 산불·화재 대응능력 부족 및 배면물탱크 대비 안정적 기동 제한
 - 배면물탱크 대비 담수용량 제한 및 이동속도 저하
 - ※ 헬기속도 : 배면물탱크 100~130노트, 밤비바켓 80노트
 - 밤비바켓 사용 시 장애물(전신주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

- 담수량 확보가 어려운 밤비바켓 단점 보완을 위해 경량화 및 물 버킷과 고정식 화재 진화 장비의 장점을 결합한 리트렉터블 배면 물탱크* 장착 추진

* 2개사 생산 : 호주 Helitak 또는 미국 Recoil

<배면 물탱크 비교표>

기 종	밤비바켓(물주머니)	리트렉터블 배면물탱크(수축·확장식)
담수량	2,000ℓ	3,850ℓ(+1,850ℓ)
참고 사진		

□ 적합성 검토

- 항공기 성능 내에서 최대 담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로 리트렉터블 수축·확장식 배면물탱크 장착이 적합

※ 자료: 소방청

□ 2025년도의 소방헬기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이 전체 출동의 18.7%로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울산·경북·경남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던 올해 3월에는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 횟수가 26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볼 때, 산불화재 시에는 산림청의 산림화재 진화 헬기 외에 소방청의 소방헬기 역시 산불진화에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²⁸⁾.

28) 산불진화는 산림청 소관 업무이나,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이 본연의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산불진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5년도 소방헬기 출동 현황>

구분	운항 시간 (H)	구조 구급 (명)	출동(운항) 횟수 (건, %)						
			계	구조 구급	화재 출동	산불 진화	교육 훈련	순찰 배치	정비 비행
계	2033:33	401	1,601 (100.0)	430 (26.9)	25 (1.6)	299 (18.7)	618 (38.6)	5 (0.3)	224 (14.0)
1월	430:20	116	390	126	8	22	175	2	57
2월	538:51	156	479	162	6	17	216	2	76
3월	1064:22	129	732	142	11	260	227	1	91

-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601회, 일 평균 18회 출동
- 울산·경북·경남 산불화재 기간('25.3.21.~31.) 중 소방헬기의 조치사항은 울산(9대), 경남(28대), 경북(61대)로 하루평균 9대 투입 되었음
- * 산림청 : 하루평균 12대 투입(울산 10대, 경남 132대, 영월 112대)
- ※ 자료: 소방청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의 소방헬기 총 32대 중 19대의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대의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를 보강하는 경우 안정적 기동력을 갖추고 담수능력이 향상된 소방헬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방헬기 보유현황(2025. 3. 20. 기준)>

□ **17개 항공대 32대** [중구본 8대, 시·도 16개 항공대 24대(대전 임차포함)]

연번	보유기관	기종	제작회사	최대이륙(KG)	도입연도	도입가격	담수용량(L)		비고
							밤비	벨리	
1	중앙 119	EC-225(수도)	(프)에어버스	11,000	'20.07.	460억	2,000	2,500	
2		EC-225(수도)	(프)에어버스	11,000	'20.01.	460억	2,000	2,500	
3		EC-225(영남)	(프)에어버스	11,000	'08.12.	459억	-	4,000	
4		S-92(영남)	(미)시콜스키	12,020	'23.12.	557억	2,500	('25 추경)	
5		KUHC-1(호남)	한국항공우주산업(주)	8,709	'22.11.	227억	-	2,000	
6		KUHC-1(호남)	한국항공우주산업(주)	8,709	'22.11.	227억	-	2,000	
7		AS-365N2(충강)	(프)에어버스	4,250	'97.01.	37.7억	-	900	'26 헬기 교체
8		AS-365N2(충강)	(프)에어버스	4,250	'99.12.	60.9억	680	-	
9	서울	AS-365N2	(프)에어버스	4,250	'97.09.	46.4억	900	-	예정
10		AS-365N2	(프)에어버스	4,250	'99.11.	52.1억	-	900	
11		AW-189	(이)레오나르도	8,600	'18.11.	338억	2,000	(불가)	
12	부산	AW-139	(이)레오나르도	7,000	'18.03.	230억	1,500	-29)	
13		AW-139	(이)레오나르도	7,000	'24.01.	230억	1,500	1,890	
14	대구	AW-169	(이)레오나르도	4,800	'19.10.	160억	1,000	(불가)	
15		KA-32T	(러)쿠마페	12,600	'05.12.	66억	1,590	3,000	
16	인천	AW-139	(이)레오나르도	6,400	'13.02.	173억	1,200	1,890	
17		AW-139	(이)레오나르도	7,000	'24.01.	230억	1,200	1,890	
18	광주	AW-139	(이)레오나르도	7,000	'22.12.	230억	1,500	(진행중)	
19	대전	BK-117C1	(일)가와사키	3,350	임차 헬기 ('25. 12. 31.까지)				
20	울산	KA-32T	(러)쿠마페	11,000	'00.12.	54억	-	3,000	
21	경기	AS-365N3	(프)에어버스	6,400	'01.12.	81억	-	900	'26.교체
22		AW-139	(이)레오나르도	11,000	'10.11.	120.5억	1,500	(진행중)	
23	강원	AW-139	(이)레오나르도	6,800	'09.06.	139억	1,500	(불가)	
24		AW-139	(이)레오나르도	6,400	'17.05.	230억	1,500	(진행중)	

연번	보유 기관	기 종	제작회사	최대이륙 (KG)	도입 연도	도입 가격	담수용량(L)		비고
							밤비	벨리	
25	충북	BK-117C2	(일)가와사키	3,585	'05.04.	68.8억	545	800	
26	충남	AW-139	(이)레오나르도	6,400	'15.12.	185억	1,500	(진행중)	
27	전북	AW-139	(이)레오나르도	7,000	'22.10.	230억	1,500	1,890	
28	전남	AW-139	(이)레오나르도	7,000	'21.11.	230억	1,200	(진행중)	
29	경북	KUHC-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8,709	'24.12.	243억	1,590	2,000	
30	경북	AS-365N3	(프)에어버스	4,300	'06.02.	106억	900	900	
31	경남	KUHC-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8,709	'22.06.	242.7억	1,590	2,000	
32	제주	KUH-1EM	한국항공우주산업(주)	8,709	'18.05.	252.3억	1,590	2,000	

* 20년 이상 노후 헬기(6대)

** 타 기관 헬기현황: 산림청 47대, 경찰청 19대, 해양경찰 26대(헬기20, 고정익6)

※ 자료: 소방청

29) 2018년에 도입된 AW-139 헬기는 예산 부족으로 물탱크가 미장착되었음. 부산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임(자료: 소방청)

□ 다만, 소방청의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지원’ 사업의 집행계획에 따르면 5월 중 추가경정예산이 배정되는 경우 8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조달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면 물탱크 제작 및 납품을 끝낸 이후, 약 3-4주간 배면물탱크 장착 및 이를 위한 헬기 개조를 완료하여 2026년 3월까지의 동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음.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집행계획(안)>

구 분	예상 소요기간	추진사항
예산배정	‘25. 05.	▶ 배면물탱크 예산 확정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25. 05. ~ 08. (3개월)	▶ 사업설명회, 규격심의회, 제안서 평가, 협상 진행 등
제작 기간	‘25. 09. ~ ‘ 26. 02. (6개월)	▶ 배면물탱크 제작 및 납품
장착 수리개조 수행	‘26. 02. ~ 03. (3~4주)	▶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수리개조(전기설비 구축 등) 수행
사업 종료	‘26. 03.	▶ 수리개조 완료 및 납품검사 결과 제출

※ 자료: 소방청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월~4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 사업은 대형 산불시기에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 만큼, 소방청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당초 사업 집행계획안대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보강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⁰⁾³¹⁾.

30) 이에 대해 소방청은 S-92 헬기의 경우 구매 계약 당시(2020년)에는 STC(FAA 또는 EASA의 물탱크에 대한 부가형식증명)가 발급된 물탱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헬기 구매 당시에 배면 물탱크를 함께 구매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또한, 소방청은 2025년 현재, S-92 헬기에 장착 가능한 배면물탱크를 제조하는 회사는 2곳이 있는데, 호주 H사는 STC가 발급된 상태('24년 7월)여서 물탱크를 즉시 구매하여 장착 가능한 상태이고, 미국 R사는 2025년 7월 중에 FAA(미국 국토부)에서 STC 발급이 예상되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STC(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부가형식증명) :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항공기기술기준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 EASA(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항공안전청

*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

31) 2022년 3월 발생했던 강원·경북 산불 재난 당시 대형 산불현장에서의 소방헬기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보강 필요성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0대의 헬기에 배면 물탱크를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22년에 추진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계약 이후 배면물탱크 도입까지 약 5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었음.

<2022년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관련 진행 사항>

(단위: 백만원, %)

시 도	계약일자	도입일자	소요기간
중앙	'23.04.10.	'24.02.10.	약 10개월
강원	'22.11.24.	'23.05.04.	약 5개월
경기	'23.11.3.	'24.6.21.	약 8개월
충남	'22.12.29.	'23.10.14.	약 11개월
전남	'22.11.14.	'23.6.15.	약 7개월
전북	'23.01.02.	'23.12.27.	약 12개월
광주	'22.12.08.	'23.8.4.	약 8개월
부산	'22.11.25.	'23.11.16.	약 12개월

※ 자료: 소방청

또한, 배면물탱크 도입 이후 배면물탱크를 소방헬기에 장착하는 사업은 2025년 연말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2022년도 제2회 추경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경과>

○ 예산 배정

-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2대
- 시·도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 8대(부산 1대, 광주 1대, 경기 1대, 강원 2대, 충남 1대, 전북 1대, 전남 1대)

○ 사업 추진 현황

- 소방청 소속 헬기(2대),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1대), 전북소방본부 소속 헬기(1대)는 2025년 4월 현재 배면물탱크를 활용하여 산불 등 화재진압 활동 중
-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 중 5대[광주(1대), 경기(1대), 강원(1대), 충남(1대), 전남(1대)] 2025년 7월부터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수리 개조를 진행할 예정임. 소방청은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설계와 부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어 수리 개조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동 헬기들은 2025년도 말까지는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수리 개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강원소방본부 소속 AW139 헬기(1대) 배면물탱크 장착 예산은 불용되었음.
(동 헬기는 2009년에 도입되었는데, 2011년 이후 동일 기종의 헬기 기체사이즈가 변경되었음. 배면물탱크 제조사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구형 및 신형 AW139 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배면물탱크를 생산하고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 구형 AW139 헬기용 배면물탱크는 생산을 중단하였음. 이에 AW139 헬기용 배면물탱크 설치 예산은 불용되었음.)

<2014년 ~ 2023년 월별 평균 산불 발생 현황>

(단위: 건, ha)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건수	46	78	141	123	55	35
면적	40	267	2,347	1,080	230	1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6	8	7	15	26	27
면적	1	6	1	2	8	12

※ 자료: 산림청³²⁾

또한, 동 사업은 기존에 운용 중인 소방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하는 것인 만큼, 소방청은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소방헬기 개조와 물탱크 장착이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력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³⁾.

32) 산림청, 2023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 2024. 4., 377면.

33) 소방청은 2024년에 수도권119항공대 소속 소방헬기 2대의 물탱크 내부 지지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약 6개월간('24. 5. 23. - '24. 11. 16) 소방헬기의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설명함.

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배면물탱크 구입 방안 검토 필요

- ‘소방항공기 기본 성능 및 규격’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방헬기 및 부수 장비 등의 기본적인 성능 및 규격을 제시한 것인데,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 성능 및 규격’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헬기에는 배면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함³⁴⁾.

- 현행 규격에 따르면 중형소방헬기는 900L 이상의 용량을 가진 물탱크를 장착하여야 함. 2024년 8월 1일 이전에는 소방헬기에 갖추어야 하는 산불진화장비로 물탱크와 밤비바켓 중 1가지 이상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밤비바켓보다 소방헬기의 운항 안전성이 높고 담수용량이 큰 물탱크를 장착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헬기의 운항안전성이 향상되고 산불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물탱크의 용량이 클수록 산불 화재 진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과 현재 중형소방헬기에 장착가능한 2,700L급 물탱크의 제작 및 인증이 진행 중³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인증이 완료되면 소방청은 산악 지형이 많고 산불 화재가

34)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 중 물탱크 관련 상세 내용은 각주 12) 참조

35) 현재 강원 소방본부는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을 진행 중임(‘24. 7.월 계약). 동 헬기는 중형헬기이나 2,700L급 물탱크를 장착할 예정으로,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KAI에서 헬기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하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시험비행 및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실증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의 제한형식증명(RTC)에 2,700L급 물탱크를 포함하여 추가인증(ARTC)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2027년 5월에 강원소방본부에 납품될 예정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119항공대가 헬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수 용량이 보다 큰 물탱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대체토론의 요지

-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액을 늘릴 필요
- 상생페이 지급요건이 까다로우며, 상생페이 예산 1조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1조원으로 약 13조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
- 이번 추경은 산불대책으로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법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증액 필요
- 산불피해 지원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N분의 1 방식은 적절치 않고 피해규모에 비례해서 지원될 필요가 있음. 또한, 생계비와 주택비 정도로는 부족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포함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자체의 건설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교부할 필요
- 재난알림문자가 부실하고, 산불 발생시 대피를 위한 대응이 미흡하여 전반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피해자들에게 임시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 지역화폐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여부, 지역화폐의 효용성 등에 대한 질의
- 지역화폐 예산 최소 1조원 증액 필요
- 추경에 산불 피해 이재민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 소방청장이 요구한 재해재난 예산이 정부안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진화차 확충, 초대형 헬기, 물탱크 예산 증액 반영 필요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1조 809억 3,100만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1조 809억 3,1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에 1조원

□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에 200억원

□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에 286억 5,400만원

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1조 809억 3,100만원을 증액·신설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남 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기구 신설과 관련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 조기에 교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도로교통공단출연금에서 총 36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1개 세부사업에서 총 36억 5,7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738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38억 6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 ☐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에 457억 5,200만원
- ☐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에 7억원
- ☐ 현장대응력 강화에 16억 3,400만원
- ☐ 중양119특수구조대 지원에 257억 2,000만원

을 각각 증액하는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38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7. 심사 결과

가.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 수정의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수정의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 수정의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일반회계 : 수정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안전부는 경남 지역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기구 신설과 관련 기준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 조기에 교부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10%에서 20%까지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 부분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경북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모금 중인 기부금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재난대책비 예산은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우, 태풍,

대설 등 이후의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 재원으로서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의 여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재난대책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복구 지원금액 등 생활안정지원의 항목별 단가의 현실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산불 발생지역에서 중 과거 붕괴위험도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으나 산불로 인해 위험도가 높아진 지역을 재확인하여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바.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사. 소방청 소관

-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면밀히 수행하고,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이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첨부 :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 4.

I.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73,713	-	73,7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7,218	-	1,007,218
	경찰청	일반회계	3,657	-	3,65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소방청	일반회계	73,806	-	73,806
	합 계		1,158,394		1,158,394

II.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가. 행정안전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2039-506)	5,392	-	5,392	9,155	3,763	○ 세부사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은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 활용 가능한 전용 AI 공통기반 구축과 민원상담 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 전환을 위해 37억 6,300만원 증액	
2	전자문서소통 시스템(정보화) (1932-501)	10,530	-	10,530	39,184	28,654	○ 내역사업 ‘AI 행정업무적용’은 범정부 AI 도입 확산 등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확대 구축을 위해 286억 5,400만원 증액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2046-502)	41,634	-	41,634	51,396	9,762	○ 내역사업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수요 급증에 따라 고품질 AI 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97억 6,200만원 증액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보화) (2046-503)	15,008	-	15,008	18,186	1,770	○ 내역사업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은 증가하는 AI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AI 전문인력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17억 7,000만원 증액	
						1,408	○ 내역사업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새정부 주요정책 과제 AI 기반 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14억 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5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1143-305)	180	180	180	2,280	2,100	○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노후 건물로 일부 구역이 출입제한·폐쇄 상태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자유회관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21억 원 신규 반영	
6	지역경제 활성화 (1349-301)	3,819	-	3,819	6,759	2,940	○ 내역사업인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 29억 4,000만원 증액	
7	과학수사 감정지원 (2531-303)	12,360	-	12,360	12,560	200	○ 부검 시설을 갖춘 제주연구소 건립 계획 수립 및 부지선정, 적정규모 산출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2억원 신규 반영	
8	국립국가폭력트 라우마치유센터 조성(2436-300)	1,954	-	1,954	5,070	3,116	○ 광주 및 제주 센터의 출연금 규모를 전액 국비 부담으로 하고 제주 센터의 인력을 7명 증원하기 위하여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광주)’ 내역사업 예산을 11억 100만원 증액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제주)’ 내역사업 예산을 20억 1,500만원 증액	
9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신설)	-	-	-	20,000	20,000	○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사업은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억 원 신규 반영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접경권발전지원 (1233-300)	45,627	-	45,627	49,995	4,368	○ 내역사업 ‘북 소음피해 주민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43억 6,800만원 증액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지역발전활성화 (1231-303)	5,328	-	5,328	7,528	2,200	○ 내역사업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2005년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2025년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위한 국비 22억원 증액	
2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236-300)	8,540	-	8,540	9,190	650	○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군사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5,000만원 증액	

연 번	세 부 사 업 명 (0000-000)	2025년도			수 정 안 (D)	증 감 액 (D-C)	수 정 이 유	비 고
		본 예 산 (A)	증 감 액 (B)	추 경 안 (C=A+B)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	-	-	1,000,000	1,000,000	○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비용 1조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나. 경찰청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 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도로교통 공단출연 (출연금) (1331-314)	139,709	-	139,709	143,366	3,657	○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축비 단가인상분 등만 반영한 31억 1,700만원 증액 및 실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연장과 자회사 근로자 식대 인상을 위한 5억 4,000만원 등 총 36억 5,700만원 증액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다. 소방청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 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1132-300)	5,007	-	5,007	50,759	45,752	○ 내역사업 ‘산불특수장비 보강(신설)’은 산불 진압에 효과적인 최신 특수장비 도입·관리를 위한 것으로 457억 5,200만원 증액 -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 143억 9,000만원 증액 -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전문진화차 22대 보강: 70억 4,000만원 증액 -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개인용 산불장비 보강: 72억 8,200만원 증액 - 경상남도 일원에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 장비 8종 확충: 164억 4,000만원 증액 - 경상북도에 소방(산불)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 지원: 6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증감액 (D-C)	수정 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2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1132-312)	13,141	-	13,141	13,841	700	○ 내역사업 ‘환동해특수대응단 헬기계류장 확포장 공사(신설)’은 동해안 대형산불 방지 및 초기 진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에 조성된 헬기 계류장을 확장 공사를 위한 국비 7억원 증액	
3	현장대응력 강화 (1134-308)	2,005	-	2,005	3,639	1,634	○ 내역사업 ‘중앙단위 자원결집지 운영’은 국가 동원 소방자원의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국 시·도 소방력을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동원하기 위한 유류비 와 차량수리비 예산 4억 7,9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산불지연제 확보’는 사전에 산불지연제를 살포하여 불길을 차단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지연제 350톤 구입을 위한 예산 11억 5,500만원 증액	
4	중앙119 특수구조대 지원 (1171-301)	37,374	-	37,374	63,094	25,720	○ 내역사업 ‘중앙119산불진화대 운영(신설)’은 산불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산불진화대에 산불대응 특수장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113억 2,000만원 증액 - 산불전문진화차(대형 6대, 소형 6대) 보강: 49억 2,000만원 증액 - 고성능 화학차(2대), 초대형 물탱크(6대) 보강: 64억원 증액 ○ 내역사업 ‘소방헬기 도입’은 산불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대규모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을 위해 144억원 증액	

(2) 특별회계: 해당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해당없음

III.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경남 지역의 신속한 산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기구 신설과 관련 기준인건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 조기에 교부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제고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이 10%에서 20%까지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부분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경북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모금 중인 기부금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재난대책비 예산은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우, 태풍, 대설 등 이후의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 재원으로서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의 여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재난대책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복구 지원금액 등 생활안정지원의 항목별 단가의 현실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산불 발생지역에서 중 과거 붕괴위험도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으나 산불로 인해 위험도가 높아진 지역을 재확인하여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나. 소방청

-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면밀히 수행하고,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이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